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1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이병진 · 조계원
문대림 · 김주영 · 송옥주
박용갑 · 강득구 · 안도걸
임호선 · 안호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· 외과 · 소아청소년과 · 산부인과 · 영상의학과 · 마취통증의학과 ·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·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여야 하고,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· 외과 · 소아청소년과 ·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· 마취통증의학과 ·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당 규정과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, 분만 과정에서의 높은 위험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, 이는 지방소멸 · 인구소멸 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한편, “산부인과”라는 명칭이 여성의 임신·분만·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함.

이에 “산부인과”의 명칭을 “여성건강의학과”로 변경하고,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경우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설·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3)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의 제목 “(종합병원)”을 “(종합병원의 요건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산부인과”를 각각 “여성건강의학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으로서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, 종합병원 소재지 관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종합병원을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4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아 시설·장비 확충 및 운영(여성건강의학과에 전속하는 전문의 등 인력 확보 및 충원, 인건비를 포함한다)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범위,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3(<u>종합병원</u>) ① 종합병원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.	제3조의3(<u>종합병원의 요건 등</u>) ①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인 경우에는 내과 · 외과 · 소 아청소년과 · <u>산부인과</u> 중 3개 진료과목, 영상의학과, 마취통 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 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 의를 둘 것	2. ----- ----- ----- <u>여성건강의학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3.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<u>산부인과</u> , 영상의학과, 마취통 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 또 는 병리과,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 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	3. ----- ----- ----- <u>여성건강의학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③ 「<u>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</u>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으로서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, 종합병원 소재지 관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종합병원을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4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아 시설·장비 확충 및 운영(여성건강의학과에 전속하는 전문의 등 인력 확보 및 충원, 인건비를 포함한다)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④ 제3항에 따른 지원범위,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